예금계좌 변 경 → 후 원 회 모 금 → 정치자금영수증 후 원 회 변경·해산

# 4. 후원금 모금

가. 후원회는 계좌이체·현금 등을 이용하여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.

※ 집회에 의한 방법으로는 모금할 수 없음.

# 후원인의 정치후원금 기부(법 제11조)

- □ 후원인은 연간 모든 후원금을 합쳐서 2천만원을 초과하여 기부할 수 없으며, 후원인이 1개 후원회 대상 연간 기부한도액은 시·도의회의원후원회는 2백만원, 자치구·시·군의회의원후원회는 1백만원입니다.
- 나. 후원회가 연간 모금·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은 시·도의회의원 후원회는 5천만원, 자치구·시·군의회의원후원회는 3천만원 입니다.
- 다. 임기만료에 의한 동시지방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지역구에 후보자로 등록한 지방의회의원후원회는 연간 모금·기부한도액의 2배를 모금·기부할 수 있습니다.
- 라. 회계책임자는 모금액이 모금한도에 근접한 때에는 수시로 예금계좌를 확인하여 계좌를 폐쇄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.

# 업무TIP

- □ 1회 10만원 이하, 연간 120만원 이하의 후원금은 익명으로 기부할 수 있습니다.
- □ 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익명기부한도액을 초과하거나 타인의 명의 또는 가명으로 후원금을 기부받은 경우 그 초과분 또는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기부받은 금액은 국고에 귀속시켜야 합니다.

예금계좌 변 경 ➤ 후 원 회 모 금 ➤ 정치자금영수증 ➤ 후 원 회 변경·해산

# 후원회 모금 관련 벌칙(법 제45조, 제47조, 제48조)

- □ 연간 기부한도액(2천만원)을 넘거나 하나의 후원회에 기부한도액(시·도의회의원 후원회는 2백만원, 자치구·시·군의회의원후원회는 1백만원)을 넘어서 기부한 자
-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
- □ 후원회의 모금·기부한도(시·도의회의원후원회는 5천만원, 자치구·시·군의회의원후원회는 3천만원)를 위반하여 후원금을 모금한 자
-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
- □ 「정치자금법」의 규정을 위반하여 후원금을 모금하거나 후원금 모금을 고지·광고한 자
-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
- □ 후원회로부터 모금을 위임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치자금영수증 원부, 기부자의 인적사항 또는 후원금을 인계하지 아니한 자
-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
- □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자
- 200만원 이하의 벌금

#### 후원회 모금 관련 질의회답

- □ 후원회 회원이 아닌 자의 후원금 기부
- 후원회의 회원이 아닌 자도「정치자금법」제6조의2(후원인의 기부한도등)의 규정에 의거 기부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후원회에 금품을 기부할 수 있음(2002. 6. 3. 회답).
- □ 신용카드 조회기(단말기)를 이용한 후원금 모금
- 이동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신용카드 체크기(단말기)를 이용하여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음. 다만, 정당이나 후보자(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)를 지지·추천하거나 집회에 의한 모금 등 「공직선거법」 또는 「정치자금법」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모금해서는 안 됨(2005. 10. 19. 회답).
- □ 모바일블로그를 이용한 정치자금 모금
- 「정치자금법」 제7조에 따라 등록된 후원회는 모바일 블로그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후원인에게는 후원인이 결제한 금액이 기재된 정치자금영수증을 교부하고 통신사 등에 지급된 수수료는 후원금 모금경비로 처리하여야 함(2006. 11. 22. 회답).
- □ 페이팔(Paypal) 서비스를 이용한 후원금 모금
- 「외국환거래법」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「정치자금법」상 제한되지 아니함. 다만, 「정치자금법」제31조(기부의 제한)에 따라 외국인, 국내·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기부할 수 없으며, 누구든지 국내·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기부할 수 없음(2019. 9. 27. 회답).
- □ 텀블벅을 이용한 후원금 모금
- 후원회가 크라우드펀딩 사이트인 텀블벅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직접 후원금을 모금하는 방식이라면 「정치자금법」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임(2019. 3. 26. 회답).
- □ 후원회홈페이지에서 모금액현황 공개 이벤트
- 후원회홈페이지에서 이미지화된 가상공간을 상징적으로 분양하는 방식의 모 금액현황 공개 이벤트를 하는 것은 무방함(2010. 5. 7. 회답).

예금계좌 변 경	>	후 원 회 회원모집	>	후 원 금 모 금	>	정치자금영수증 발행	>	후 원 회 변경·해산
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-

# 5. 정치자금영수증 발행

# ① 정치자금영수증 교부

가. 후원회는 후원인으로부터 후원금을 기부받은 날부터 30일까지 정치자금영수증을 발행하여 후원인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.

#### 유의사항

- □ 후원회는 정치후원금센터를 통한 전자 정치자금영수증이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가 제작하는 (종이)정치자금영수증을 발행·교부할 수 있으며, 별도의 영수증 발급프로그램은 사용이 불가합니다.
- 나. 후원회는 후원인이 영수증 수령을 원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영수증을 발행 하여 후원회에 보관하여야 합니다.

#### 업무TIP

- □ 전자 정치자금영수증의 경우, 정치후원금센터에 후원금 내역을 등록하는 것으로도 충분하고 별도 출력하여 보관하지 않아도 됩니다.
- □ 후원인이 영수증 수령을 원하지 않거나 후원인 정보를 알 수 없거나 후원인이 연간 1만원 이하의 후원금을 기부한 경우에도 후원회는 정치후원금센터에 후원금 내역을 모두 등록하여야 합니다.
- □ 후원회가 후원인의 인적사항을 뒤늦게 파악한 경우, 기존에 발행한 전자 정치자금영수증 내역을 수정하여 후원인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.

### 정치자금영수증 교부 방법

- □ 후원인에게 직접 전달
- □ 우편 발송
- □ 문자메시지·E-mail·카카오톡 등 이용 발송(PDF 혹은 그림파일로 변환하여 발송)

예금계좌 변 경 ➤ 후 원 회 모 금 ➤ <mark>정치자금영수증</mark> 발행 ➤ 변경·해산

다. 후원회는 수입용 예금계좌에 입금된 후원금에 대한 정치자금 영수증 발행을 위하여 해당 금융기관에 입금의뢰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알려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. 예금계좌 변 경 후 원 회 회원모집

>

후 원 금 모 금 정치자금영수증 발행 ▶

후 원 회 변경·해산

# [작성예시1]

[별지 제21호의2서식]

후원금 입금의뢰인 성명 및 연락처 통보 요청서								
후원회명①								
입금계좌②		예금주명						
요청근거	「정치자금법」제17조제13항							
요청사유	「정치자금법」제17조에 따른 정치자금영수증 발행							
요청내용	붙임 회보서에 기재된 입금내역에 대한 입금의뢰인의 성명과 연락처							

「정치자금법」 제17조제13항 및 「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」 제21조제10항에 따라 위와 같이 후원금 입금의뢰인의 연락처를 알려줄 것을 요청하오니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 후원금 입금의뢰인 성명 및 연락처 회보서 1부.③

년 월 일

○○후원회 대표자④ 직인

○ ○ ○ ○ 귀중(금융기관명)

주 "입금계좌" 란에는 「정치자금법」 제34조제4항에 따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정치자금의 수입을 위한 예금계좌의 계좌번호를 기재합니다.

예금계좌 변 경	>	후 원 회 회원모집	>	후 원 금 모 금	>	정치자금영수증 발행	>	후 원 회 변경·해산
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-

작 성 요 령						
1	후원회의 명칭을 적습니다. 예) ○○시·도의회의원(○○구·시·군의회의원)○○○후원회					
2	신고된 수입용 예금계좌의 계좌번호를 적습니다.					
3	후원금 입금의뢰인 성명 및 연락처 회보서를 작성합니다.					
4	후원회 대표자의 신고한 인영(직인)을 찍습니다.					

예금계좌 변 경 ➤ 후 원 회 모 금 **> 정치자금영수증** 후 원 회 변경·해산

# [작성예시2]

[별지 제21호의3서식]

후원금 입금의뢰인 성명 및 연락처 회보서								
	Ċ ì	입금내역		회 보 내 역				
연번	입고	입금명의	입금액	성명	연락처	비고		

「정치자금법」 제17조제13항 및 「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」 제21조제10항에 따라 위와 같이 회보합니다.

년 월 일

(금융기관) ○ ○ ○ ○ 대표자 직인

# ○○후원회 귀중

- 주 1. "입금내역"은 후원회가 인적사항 통보를 요청하는 때에 작성합니다.
  - 2. "입금일"란에는 신고된 정치자금계좌에 후원금이 입금된 일자를 기재합니다.
  - 3. "입금명의"란에는 예금통장에 표시된 후원금 입금의뢰인의 성명 등의 내용을 그대로 기재합니다.
  - 4. "회보내역"은 금융기관이 작성합니다.
  - 5. "성명"란에는 후원금 입금의뢰인의 실명을, "연락처"란에는 전화번호(휴대전화의 전화번호를 포함한다)를 기재합니다.